

직원 채용시험 부가점수표

□ 법정가점

구분	부가점수	비 고
취업지원 대 상 자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가점 비율	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

□ 특별가점(선택가점)

구 분			부가점수	비 고
선 택 가 점	재직직원	1년 이상 재직한 직원 (기간제 계약만료자의 경우는 계약만료 후 2년 이내)	필기시험 만점의 7%	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
	장애인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장애인	필기시험 만점의 5%	
	다문화가족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	필기시험 만점의 3%	
	한부모가족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	필기시험 만점의 3%	
	체험형 청년인턴	청년인턴 수료자 (인턴 수료 후 2년 동안 유효)	필기시험 만점의 2%	
		청년인턴 우수자 (인턴 수료 후 2년 동안 유효)	면접시험 만점의 5%	
	정년퇴직자	한국도로공사서비스(주) 정년퇴직(예정)자 (기간제 공개채용 지원시)	서류전형 면제	
	기간제 계약만료자	기간제 계약만료자 중 근무성적평가결과 ‘적격’ 판정을 받은자 (기존 계약만료 후 2년 이내 기간제 공개채용 지원시)	서류전형 면제	

□ 특별가점(자격증가점)

구분	채용분야			부가점수	비 고
	사무·영업	시설·안전·보건	정보통신		
자격증가점	정보처리기사	산업안전지도사, 산업안전기사, 건설안전기사, 산업보건지도사, 산업위생관리기사, 대기환경기사, 인간공학기사, 소방설비기사, 전기기사, 건축설비기사	정보처리기사, 정보보안기사,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, 전자계산기기사, 전자기사, 전파전자통신전파 통신 전파전재기사, 무선설비기사, 정보통신기사, 방송통신기사	필기시험 만점의 5%	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
	정보처리산업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급, 한국사능력검정 1·2급	산업안전산업기사, 건설안전산업기사, 산업위생산업기사, 대기환경산업기사, 소방설비산업기사, 전기산업기사, 건축설비산업기사	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 산업기사, 정보보안산업기사, 전파전자통신 산업기사, 무선설비산업기사, 정보통신산업기사, 방송통신산업기사	필기시험 만점의 3%	

- * 가점계산 방법 : 법정가점, 선택가점(재직직원, 장애인, 다문화가족, 한부모가족, 청년인턴 가점 중 택 1), 자격증 가점을 합산 적용하되, 법정가점과 선택가점은 합산하여 10%를 초과할 수 없다.
- * 재직직원 및 청년인턴가점은 해당 직종 7급 공개 채용시에만 적용한다.
- * 자격증 가점은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제3조 (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) 별표 2의 중직무분야별 범위 내에서는 상위 자격 1개만 인정하며, 합산하여 10%를 초과할 수 없다.